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01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9.

발 의 자: 박덕흠 • 이만희 • 김예지

고동진 · 강승규 · 엄태영

김상욱 · 김정재 · 조지연

김선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올해 봄철 일조량 부족,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이 컸으며, 반복되는 수급·가격 불안은 국내 농업의 지속가 능성을 위협하는 한편,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 됨.

그동안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보다는 정부 주도의 산지 폐기 등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수급 관리가 이루어져 수급 상황별로 적시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.

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선제적·자율적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의 육성도 중요하나 농가 참여 저조 등으로 수급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.

이에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·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,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서 수급관리센터 설치·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시·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·운영할 경우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).
- 나. 주산지협의체가 주산지별 생산 면적, 생산 및 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, 중앙협의회를 통해 해당 계획 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함(안 제4조의3 신설).
- 다. 농림업관측을 면적, 작황 등 공급 부문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생산자단체 등이 농산물 수요자와 일정기간 물량과 가격조건 등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마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1항).
- 바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전 재배면적 관리, 생육 관리,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4항).

사. 시·도지사는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수급관 리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4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생산자 대표로서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주산지협의체의 기능 등)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- 1.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설정
- 2. 주산지별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
- 3. 품목별 생육 및 작황 관리
- 4. 그 밖에 수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제1항의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중앙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수급 관리 계획

- 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야 한다.
- ④ 그 밖에 수급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소비동향"을 "소비실태, 수요량 변화"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"(계약생산)"을 "(계약생산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"을 "따른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, 제2항에 따른 계약거래를 체결"로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농산물 수요자 간 일정기간 공급 물량과 가격조건 등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거 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

제9조의 제목 "(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)"를 "(수급 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"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"을 "제4항에 따른수급안정사업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으로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"로, "농산물을수매할 수 있다"를 "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"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생산・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"을 "다음각 호의 수급안정사업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사전 재배면적 관리
- 2. 병해충 방제 등 생육 관리
- 3. 출하 시기 조정 등 출하조절
- 4.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및 계약거래 장려
- 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⑥ 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의 집행기관으로 관할 구역 내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수급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안 제4조의2(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) 제4조의2(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)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 산지의 시 · 도지사는 주산지의 지 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 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 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(이하 "협 의체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 · 도지사는 생산자 대 <후단 신설> 표로서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조 금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4조의3(주산지협의체의 기능 등)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1.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설정 2. 주산지별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 3. 품목별 생육 및 작황 관리 4. 그 밖에 수급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2에 따른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 제5조(농림업관측)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 하여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 농 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, 생 산면적, 작황, 재고물량, 소비동향,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 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제6조(계약생산) ① 농림축산식품부 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 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, 지역축산업협동조합, 품목별·업종별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품목조합연합회,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(농협경

<u>한 품목의 경우 「농업·농촌 및</u>
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
따른 생산자단체에 제1항의 수급
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.
③ 중앙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
항에 따라 수립된 수급 관리 계획
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
유하여야 한다.
④ 그 밖에 수급 관리 계획의 수립
및 이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
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제5조(농림업관측) ①
소비실태,
 수요량 변화
제6조(계약생산 등) ①

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)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(이하 "생산자단체"라 한다)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 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<u>채소류</u>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 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 격안정기금으로 해당 <u>농산물을</u> 수 매할 수 있다. 다만, 가격안정을

·.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
또는 생산자단체와 농산물 수요자
간 사전에 일정기간 공급 물량과
가격조건 등을 정하여 이루어지는
계약거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
<u>다.</u>
<u>③</u>
따른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, 제2
항에 따른 계약거래를 체결
세9조(수급 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) ①
제4항에 따
른 수급안정사업에도 불구하고 이
상기후 등으로 채소류 등 저장성
이 없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불
<u>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</u>
<u> 농산물의 수매 등 필</u>
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

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 략)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<u>생산・출</u>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⑤ (생략)

<신 설>

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- 1. 사전 재배면적 관리
- 2. 병해충 방제 등 생육 관리
- 3. 출하 시기 조정 등 출하조절
- 4.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및 계약거래 장려
- 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⑤ (현행과 같음)
- ⑥ 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수 급안정사업의 집행기관으로 관할 구역 내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수급관리센터의 운 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